

시 보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1321호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2013년 5월 13일 월요일

목 차

조 례

- 인천광역시조례 제5229호 (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) 5
- 인천광역시조례 제5230호 (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) 9
- 인천광역시조례 제5231호 (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) ... 12

규 칙

-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19호 (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) 18
-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20호 (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) 22

고 시
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-69호 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의 재배치 고시) 23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-70호 (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 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) 25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-71호 (용현·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 (변경),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) 30

회									
람									



인천광역시
Incheon Metropolitan City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대변인실

규 칙**인천광역시의회규칙(공포)**

☐ 제 명 :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
규칙

☐ 개정이유

- 가.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,
- 나.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흠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가. 제명에 의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아닌 법 제43조에 따른 의회의 규칙임을 명백히 함(제명)
- 나. 목적 규정을 보완하여 조례의 위임으로 제정된 규칙과 구분함(제1조)
- 다.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도 위증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, 고발장 작성 등 후속조치는 의장이 수행하도록 함(제21조제2항 및 제3항)

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(2013. 5. 6)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 이 성 만

2013년 5월 13일

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19호

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다. 다만, 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,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다.

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증거자료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,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다.

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1호 서식]

고 발 장

1. 고 발 인
2. 피고발인
3. 고발취지
4. 범죄사실
5. 고발이유
6. 증거자료
7.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

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,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고발인

인천광역시의회의장

직인

별지 : 증거자료 세부 목록
(인적증거, 증거서류, 증거물, 기타 증거)

○○지방검찰청 또는 ○○지방경찰청 귀중

인천광역시의회규칙(공포)

☐ 제 명 :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☐ 개정이유

- 가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0년 2월 26일자로 개정되었으며,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시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 교육·학예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이송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또한, 이송된 청원의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지연·장기화 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청원인 권리구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
☐ 주요내용

- 가. 청원 이송·처리기관을 종전의 시장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보완하여 소관 청원을 이송·처리할 수 있도록 함(제11조 ~ 제13조)
- 나. 처리결과 미보고 청원에 대한 시장 또는 교육감의 중간보고 의무 사항 신설로 청원인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(제12조 제2항)

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(2013. 5. 6)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 성 만

2013년 5월 13일

인천광역시의회 규칙 제20호

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각각 “시장 또는 교육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,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가 60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진행상황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시장”을 “시장 또는 교육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